

<판례변경으로 인한 교재 수정사항>

기본서 323쪽

수정 전	수정 후
⑤ 지료: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(대판 94다37912).	⑤ 지료 :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
	지료를 지급하여야 하며, 그 지료는 분묘를
	설치한 때부터가 아니라 토지 소유자가 분묘
	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지급해야
	한다(대판 전합 2021. 4. 29 2017다228007).

기본서 323쪽 보조단 기출

수정 전	수정 후
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 지료를 지급할	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 지료를
필요가 없다.	지급 하여야 한다.

기본서 358쪽 메타인지 학습체크 정답

수정 전	수정 후
09. ②	09. ①

요약집 112쪽

수정 전	수정 후
⑥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.	⑥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 해야 한다.